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 우	법 제63조 제2항제1호	125	250	500	500
나. 법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2호	25	50	100	100
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300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300
마.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 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보관하 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300
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3호	50	100	300	500
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3호	100	200	400	500
아.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4호	50	100	300	500
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 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4호	50	100	300	300